

19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·세출결산 및 예비지출 승인안

의안 번호	63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6. 15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및 제125조 제1항,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·세출, 기금, 채권, 채무 등에 관한 결산 및 예비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세입·세출 결산

(1) 일반회계

-세입 결산액 6조3,356억9백만원  
-세출 결산액 5조8,294억7천8백만원  
-이월총액 5,061억3천1백만원  
이중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, 2, 3항에 의한 다음년도 명시이월액 43억8천8백만원, 사고이월액 1,967억5천7백만원, 계속비 199억7천2백만원 등 이월액은 총 2,211억1천7백만원이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49억2천6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,800억8천8백만원임.

(2) 특별회계(도시철도건설사업 등 8개 특별회계)

-세입 결산액 3조951억7천5백만원  
-세출 결산액 2조5,893억1천4백만원  
-이월총액 5,058억6천1백만원  
이중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, 2, 3항에 의한 다음년도 사고이월 865억7천4백만원, 계속비 1,714억7천5백만원 등 이월액은 총 2,580억4천9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,478억 1천2백만원임.

(3) 공기업회계(수도사업특별회계)

1999년말 현재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결산현황은

가) 세입예산결산

-수익적수입 5,652억8천4백만원  
-자본적수입 1,490억9천2백만원

· 합 계 7,143억7천6백만원

나) 세출예산결산

-수익적지출 3,463억4천5백만원  
-자본적지출 2,540억8천3백만원

· 합 계 6,004억2천8백만원

다) 자금결산

-수 입 6,979억6천8백만원  
-지 출 6,004억2천8백만원  
-이월액 975억4천만원

라) 자 산

1999년도말 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은 4조254억6백만원으로 1998년도말에 비하여 8,976억1천5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,

그 결산내용은

-유동자산 1,284억9천1백만원  
-고정자산 3조8,969억1천5백만원

마) 부 채

1999년도말 현재의 부채총액은 7,117억 1천8백만원으로

-유동부채 761억2천7백만원  
-고정부채 6,355억9천1백만원

1998년도말에 비하여 121억6백만원이 감소되었음.

바) 자 본

1999년도말 현재의 자본총액은 3조 3,136억8천8백만원으로 1998년도말에 비하여 9,097억2천1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,

자본결산 내용은

-자 본 금 912억4천3백만원  
-자본잉여금 2조8,128억5천7백만원  
-이익잉여금 4,095억8천8백만원

사) 손 익

1999년도말 당기순이익은 1,091억5천1백만원으로 1998년도말에 비하여 388억8천2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, 그 내용은

-수 익 5,716억7천만원  
-비 용 4,625억1천9백만원  
-당기순이익 1,091억5천1백만원

나. 기금결산

1999년도말 현재의 기금 총액은 7,715억 4천3백만원으로 1998년도말에 비하여 355억3천1백만원이 증가되어, '99년도 중

폐지된 환경보전형 농업육성기금 등 3개 기금을 제외한 '99년도말 현재 13개 기금의 종류 및 현재액 내역은

- 재정투융자기금 1,609억7천3백만원
- 신청사건립기금 800억원
- 식품진흥기금 355억6천1백만원
- 재해구호기금 633억1천만원
- 사회복지기금 330억4천2백만원
- 여성발전기금 112억1천1백만원
- 중소기업육성기금 2,704억2천3백만원
- 도시가스사업기금 35억3천8백만원
- 문화예술진흥기금 280억7천3백만원
- 도로굴착복구기금 257억3천4백만원
-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62억2백만원
- 재해대책기금 460억5천만원
- 재난관리기금 74억2천6백만원

다. 채권현재액

1999년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5,971억2천9백만원으로 1998년도말에 비하여 699억6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, 채권의 회계별 현재액은

- 일반회계 331억4천1백만원
- 특별회계 5,620억7천만원
- 공기업회계 19억1천8백만원

라. 채무결산

1999년도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1조4,888억3천1백만원으로 1998년도말에 비하여 2,971억8천6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, 채무결산 회계별 내역은

- 일반회계 1,685억9천9백만원
- 특별회계 1조2,030억7천만원
- 공기업회계 991억6천2백만원
- 보증채무 180억원

마. 예비비 지출

(1) 일반회계의 예비비 집행현황은

- 예비비예산액 650억6천7백만원
- 지출결정액 224억1천5백만원
- 지출액 157억5천3백만원
- 이월액 14억6천8백만원
- 지출결정액 중 미집행액은 51억9천4백만원임.

· 그 사용내역은 잔디마을 취락구조 개선사업, 소송판결금, 가락농수산물검사소 신축 및 가계지원비 지

급 등 39건임.

(2) 특별회계의 예비비 집행현황은

- 예비비예산액 456억6천6백만원
- 지출결정액 39억7천4백만원
- 지출액 33억5천3백만원
- 이월액 3억3천5백만원
- 지출결정액 중 미집행액은 2억8천6백만원임.

· 그 사용내역은 교통종합개선사업, 차적변조사건 관련 소송배상금, 지하철 9호선 민자유치 타당성 조사 등 23건임.

(3) 공기업회계(수도사업특별회계)의 예비비 집행현황은

- 예비비예산액 63억4천6백만원
- 지출결정액 18억5천9백만원
- 지출액 13억4천7백만원
- 이월액 3억4천8백만원
- 지출결정액 중 미집행액은 1억6천4백만원임.

· 그 사용내역은 가계보조비 신설, 구역 유량계 신설 및 이설, 구의 제4정수장 시설물 정비공사 등 총 10건임.

바. 계속비 집행

(1) 일반회계의 계속비 집행현황은

- 계속비예산액 1,283억1백만원
- 예산현액 1,419억8천8백만원
- 지출액 1,214억4천9백만원
- 이월액 199억7천2백만원
- 주요 지출내역은 서남권농수산물 도매시장건설공사 등 6건이며, 미집행액은 5억6천7백만원.

(2) 특별회계의 계속비 집행현황은

- 계속비예산액 8,030억4천5백만원
- 예산현액 1조949억7천2백만원
- 지출액 9,234억9천7백만원
- 이월액 1,714억7천5백만원
- 특별회계 계속비 집행은 도시철도건설사업뿐이며, 미집행액은 없음.

(3) 공기업특별회계의 계속비사업은 없음.

3. 참고사항

가. 지방자치법 제120조(예비비)

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나. 지방자치법 제125조(결산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 의견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다. 지방재정법 제40조(세출결산의 이월)

-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·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- ② 세출예산액 중 당해년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- ③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년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라. 지방공기업법 제35조(결산)

- ① 관리자는 매 사업년도 말일 현재로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을 하여야 한다.
- ② 관리자는 매 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당해 지방 직영기업의 결산을 작성하고 이를 당해년도의 사업보고서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 및 사업보고서와 기타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'99 회계년도 결산총괄

(단위:백만원)

회계별 구분	예산현액 (가)	세입액 (나)	비율 (가:나) (%)	
			세출액 (다)	비율 (나:다) (%)
합계	10,133,471	10,128,752	99.95	89.0
공기업제외	9,407,577	9,430,784	100.2	89.5
일반회계	6,330,154	6,335,609	100.1	92.1
특별회계	3,803,317	3,793,143	99.7	83.9
도시철도 등 8개 특별회계	3,077,423	3,095,175	100.6	84.1
공기업회계	725,894	697,968	96.2	82.7

이월액				보조금 집행잔액 (마)	순세계 잉여금 나-(다+라+마)	비용액 (바)	
계 (라)	명시	사고	계속비			가-(다+라)	비율 (가:바)
518,625	4,388	322,790	191,447	4,926	585,981	595,626	5.9
479,166	4,388	283,331	191,447	4,926	527,900	509,619	5.4
221,117	4,388	196,757	19,972	4,926	280,088	279,559	4.4
297,508	-	126,033	171,475	-	305,893	316,067	8.3
258,049	-	86,574	171,475	-	247,812	230,060	7.5
39,459	-	39,459	-	-	58,081	86,007	11.8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○ 재건현황

(단위:백만원)

구 분	'98년도말 현재액	당해연도 증·감			'99년도말 현재액
		계	증 가	감 소	
합 계	527,223	69,906	144,995	75,089	597,129
일반회계	58,209	△25,068	11,243	36,311	33,141
특별회계	457,890	104,180	133,316	29,136	562,070
공기업 회계	11,124	△9,206	436	9,642	1,918

○ 채무현황

(단위:백만원)

구 분	'98년도말 현재액	당해연도 증·감			'99년도말 현재액
		계	증 가	감 소	
합 계	1,191,645	297,186	579,570	282,384	1,488,831
일반회계	150,255	18,344	162,230	143,886	168,599
특별회계	875,624	327,446	386,303	58,857	1,203,070
공기업 회계	80,171	18,991	31,037	12,046	99,162
보증채무	85,595	67,595	-	67,595	18,000

19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 
세입·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

의안  
번호 616

제출년월일 : 2000년 6월 10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
1. 제안사유

지방자치법 제120조, 125조 및 지방재정법시  
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1999회계년  
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·세출결  
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의의결 받고자  
제출하는 것임.

2. 결산개요

구 분	세출액	비고
세입·세출예산현액	3,050,608,026,000	
세입결산액	2,972,096,852,943	
세출결산액	2,850,805,350,732	
계	121,291,502,211	
세계 잉여금	명시이월액	2,568,000,000
	사고이월액	54,747,615,000
	계속비이월	2,303,817,000
	순세계잉여금	61,414,360,961
	국고보조금잔액	257,709,250

3. 제안근거

- 지방재정법 제41조, 제42조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